



교원자격증발급 규정

제정일	2014. 5. 1
개정일	2021. 8.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교직과목의 개설)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교과목의 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개설한다.
- 제 3조 (설치학과) 교육부에서 교사자격증 발급을 승인한 학과는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4조 (이수대상) 교원자격증 이수예정자는 위 3조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의 학생으로 한다.
- 제 5조 (이수과목) 교원자격증 이수예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직 및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6조 (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증 자격검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원자격증 발급의 주요 과정 및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 제 7조 (교원양성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제 8조 (교원양성위원회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 제 9조 (교원양성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
 2.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항 심의
 3.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0조 (교원양성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교원양성위원회 회의록)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12조 (합격기준)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 성적기준, 교직 적성·인성검사 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기타 기준으로 구분하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에 따르며 이는 <별지 1>과 같다. (개정 2016. 9. 1)
 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입학한 연도의 합격기준을 따른다. 다만, 편입학·재입학·전과생을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 학생의 입학 연도로 해석하여 합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 3. 1)
제13조 (교원자격 검정신청) 교직과정 및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운영
과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교원자격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2017. 3. 1)

1. 구비서류

- 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별지 2>
- 나) 성적증명서 1부(제출 생략 가능)
- 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학과만 제출)
- 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신설 2021. 8. 1)

제14조 (교원자격검정 신청기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은 졸업 당해 학년도에 신청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 한해 졸업 후, 연 2회 학사운영과에서 공지한 기간 내
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제15조 (신청자격의 제한) ①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라도 기본이수영역 개설 과목 및 표시과목에 해당
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교직 적성·인성검사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9. 1)
②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학생과 복학생의
경우’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경우에 대해서만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
③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 이력자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8. 1)

제16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
여 학사운영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 1.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별지 3>
-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성명,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17조 (자격증 재교부신청)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재
교부신청서<별지 4>를 학사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개정
2014.11.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 3. 1, 2020. 8.10, 2021. 8. 1)

구분	기 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교직 : 4학점 이상(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 :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013.3.1. 이후 졸업자) :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회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009~ 2012학년도 입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교직 : 4학점 이상(2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 :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013.3.1. 이후 졸업자) :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회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 교직 : 4학점 이상(2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국가기술자격증 :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년제 : 적격판정 1회 이상, 3년제 :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회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 이외 기준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양성과정(실기교사 양성과정) 운영 폐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933(2018.04.24.) “2019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추가 승인 결과 통보(동서울대학교)”]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교육 2회 이상(‘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의 경우 ’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경우에만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 이력자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 3. 1, 2020. 8.10)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정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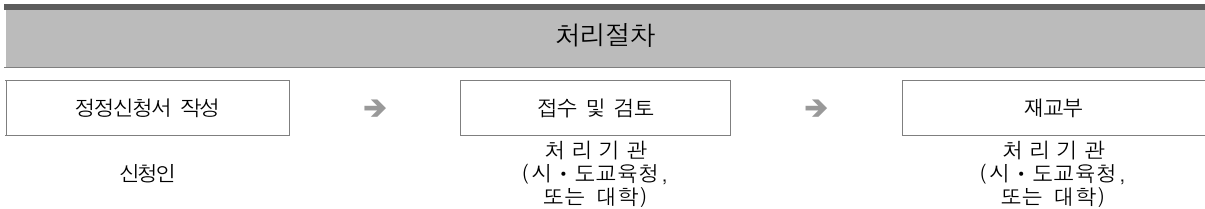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 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 3. 1, 2020. 8.10)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재교부 신청사유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00원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시에는 수수료 면제)
------	-----	--

